

승하차보조등의 설치기준(제38조의3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좌·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. 다만, 자동차 문손잡이 및 발판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, 승강구가 좌·우측 중 한쪽에만 있는 자동차에는 승강구가 있는 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

나. 등광색은 백색일 것

다. 승하차보조등은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작동하고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점등될 것

- 1) 원동기가 정지된 경우
- 2) 운전석 및 승객석의 승강구가 열린 경우
- 3) 적재함(트렁크)이 열린 경우

라. 주행빔, 주간주행등, 후퇴등을 제외한 기타 백색등화는 승하차보조등의 보조기능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

2. 관측기준

승하차보조등의 발광면은 그림과 같이 자동차 앞면, 옆면 및 뒷면의 각 방향으로 10미터 거리의 수직면과 지면으로부터 각각 1미터와 3미터 거리의 수평면 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관측자에 의해 발광면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을 것

